

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 태 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최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관광재단도 이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- 이에, 본 의원은 「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제15조제2항에 “서울관광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